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 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라. 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통보”를 “통보(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중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 중 “법 제118조제3항제8호”를 “법 제118조제3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 중 “법 제118조제5항제1호”를 “법 제1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법 제118조제3항제8호”를 “법 제118조제3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2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4 제1호 가목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을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 중 길이 100미터 미만의 여객선이 이용하는 안벽 구조의 계류시설의 건설”로 한다.

별표 4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은 제외한다.)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

군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별표 4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 “2, 3”을 “3, 4”로 한다.

2.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내항·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하여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여객선의 통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기상조건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선이 통항하는 것이 확인되면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및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승무경력에는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1)과 2)를 신설한다.

나.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1)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5 비고 중 “품질경영체제(ISO 9001 표준시리즈)”를 “품질경영체제(ISO 9001)”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대형 선단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10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1.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膠角)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 아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를 횡단하는 해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 아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마.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파제제(波除堤)·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수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

	우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사용 수역 면적 또는 매립 수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 중 길이 100미터 미만의 여객선이 이용하는 안벽 구조의 계류시설의 건설 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파제제·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업을 하려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파제제·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선은 제외한다.)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내항·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해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여객선의 통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기상조건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선이 통항하는 것이 확인되면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 또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 또는 여객운송사업면허

를 받은 여객선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심사경력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4회 이상의 최초 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력 및 유사경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승무경력에는 유급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선박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경력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가. 「국제안전관리규약」(「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같은 규약에 따른 용어의 이해: 8시간 나.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사 관련 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8시간 다.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 8시간 라. 안전관리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 16시간 마. 해운 및 선박 운항의 기본지식: 40시간
--	--

비고

1. 인증심사원은 위 표에서 정한 심사경력, 학력 및 유사경력과 교육경력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1)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
3.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하고,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 제3호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품질경영체제(ISO 9001)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교육
 - 나.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
 - 다.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마목에 따른 교육
6.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위 표 제3호가목 및 다목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

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업무(이하 “선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기관·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자격기준
1. 책임급 해사 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임급 해사 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비고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 부 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 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 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 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 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 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하 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u>통보</u>	5. ----- ----- ----- <u>통보(다만, 법 제17조에 따른</u> <u>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u>

	<u>는 국가기관의 장이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장일 경우는 제외한다.)</u>
6. ~ 37. (생략)	6. ~ 37. (현행과 같음)
38. <u>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u>	38. <u>법 제1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u> ----- -----
39. <u>법 제11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 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 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u>	39. ----- ----- ----- ----- ----- <u>제23호</u> ----- -----
40. <u>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u>	40. <u>법 제118조제3항제7호</u> ----- ----- -----
41. (생략)	41. (현행과 같음)
42. <u>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 른 과태료의 부과·징수</u>	42. <u>법 제1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u> ----- ----- ----- ----- ----- -----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 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② ----- ----- ----- ----- ----- ----- ----- -----

를」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9. (생략)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④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18조제3항제7호-----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5까지, 제2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821